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전유경 외 4명
소유물건(2025타경21555)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덕환

감정평가서번호: 등원25-03-01-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원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하원욱

하원욱 

감정평가액	칠억삼천삼백일만육천팔백원정 (₩733,016,8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덕환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경매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전유경 외 4명 (2025타경2155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06	2025.03.06 ~ 2025.03.06	2025.03.11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206.60	토지	206.60	3,548,000	733,016,800
		이	하	여	백	
합 계					₩733,016,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 '연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법원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조건

-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 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위 규정에 따라,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시 실거래 사례를 그 밖의 요인 조정시 반영하였기에, 실거래사례 가격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비교검토는 생략하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다.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3방식(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정평가 대상 건물은 건물만의 거래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워 비교방식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 또한 건물만의 임대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익방식의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건물은 그 구조, 규모, 용재, 내구년한, 현상, 이용, 관리상태, 유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건물은 내용연수 초과 현상, 관리상태 최근 개보수의 정도 및 장래이용가능년수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 하였음.

4. 그 밖의 사항

가. 일련번호 1) 위치상의 제시외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사용승인일: 2019.09.19)이 소재하나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공유자)와 상이하여 이에 구매받지않고 토지만 감정평가하였으며, 토지에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감안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나. 일련번호 1) 위치상의 제시외 건물은 법원경매 감정평가 금액 ₩626,700,918(기준시점: 2024.08.26)이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대상물건의 확정

가.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원/㎡) (2024년)	비고
1)	연지동 33-8	206.6	206.6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상 기타	소로 한면	세장형 완경사	1,728,000	-
합계	-	206.6	206.6	-	-	-	-	-	-	-

6. 기준시점 등

가.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을 기준하여 2025년 03월 06일로 함.

나. 실지조사(2025년 03월 06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가격수준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비교표준지 선정(공시기준일 : 2025.01.01)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음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표준지 A	연지동 33-11	125.6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상용	소로 한면	가장형 완경사	1,826,000

나.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하여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표준지 A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거지역	2025.01.01~2025.03.06	0.157	1.00157	2025년 01월 연장적용

다.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일련번호 1)/표준지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A)	비 고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접 근 조 건	상가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0.97	표준지 대비 본건은 형상에서 다소 열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0.9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 2004.05.14) 등에 근거하여 인근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수준과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전례를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2)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가) 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감정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m ²)	기준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m ²)	격차율
①	연지동 33- [*] 외	대	177.2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주상 기타	법원 경매	2024.06.11	3,860,000	1,728,000	2.23
②	연지동 33- [*]	대	206.6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주상 기타	담보	2022.07.20	3,850,000	1,828,000	2.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거래사례 내역

[출처: KAIS-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이용 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연지동 328-*	대	제2종 일반주거 지역	164	단독 주택	555,000,000 (건물포함)	약 3,308,000	2023.07.22	1,514,0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블록구조 2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 : 1978.05.01), 연면적 : 179.38㎡ ■ 토지 추정단가 : $\{[555,000,000\text{원} - (700,000\text{원}/\text{㎡} \times 4/40(\text{관찰감가})) \times 179.38\text{㎡}]\} / 164\text{㎡}$ \approx 3,308,000원/㎡								
㉡	연지동 33-*	대	제2종 일반주거 지역	53.2	단독 주택	155,000,000 (건물포함)	약 2,880,000	2024.12.22	1,918,0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블록구조 1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 : 1970.12.14), 연면적 : 29.75㎡ ■ 토지 추정단가 : $\{[155,000,000\text{원} - (600,000\text{원}/\text{㎡} \times 4/40(\text{관찰감가})) \times 29.75\text{㎡}]\} / 53.2\text{㎡}$ \approx 2,880,000원/㎡								
㉢	연지동 238-8	대	제2종 일반주거 지역	139	단독 주택	630,000,000 (건물포함)	약 4,457,000	2022.10.06	1,950,0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블록구조 2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 : 1977.12.21), 연면적 : 148.89㎡ ■ 토지 추정단가 : $\{[630,000,000\text{원} - (700,000\text{원}/\text{㎡} \times 4/40(\text{관찰감가})) \times 148.89\text{㎡}]\} / 139\text{㎡}$ \approx 4,457,000원/㎡								

3) 인근지역 지가수준

용도지역	용도	도로조건	지가수준	조사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상기타	소로한면	3,300,000~3,800,000원/㎡	인근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산정방법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기준시점의 표준지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비교표준지의 기준시점단가와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였음.

$$\blacksquare \text{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비교사례 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선정 비교사례	거래사례 ㉠
비교사례 선정의견	상기의 인근 지역 내 감정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효용성 및 감정평가 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위의 사례를 선정하였음.

(2) 시점수정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거래사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거지역	2023.07.22~2025.03.06	1.252	1.01252	2025년 01월 연장적용

(3) 지역요인 비교

결정의견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표준지A/거래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표준지A /거래사례㉠)	비 고
가 로 조 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4	거래사례 대비 표준지는 가로의 폭에서 우세함.
접 근 조 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4	거래사례 대비 표준지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에서 우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 경 조 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 지 조 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1	거래사례 대비 표준지는 접면 도로 상태에서 다소 열세하나, 형상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인 획지조건 우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 정 적 조 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 타 조 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9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거래사례기준 비교표준지 단가

구분	비교사례	비교사례 단가(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단가(원/㎡)
표준지 A	㊸	3,308,000	1.01252	1.000	1.092	3,657,562

(6) 격차율산정

$$\frac{\text{비교사례㊸ 기준 비교표준지단가}}{\text{표준지공시지가A} \times \text{시점수정}} = \frac{3,657,562}{1,826,000 \times 1.00157} = 2.000$$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표준지	결정 보정치
인근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및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A	2.00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기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A	1,826,000	1.00157	1.000	0.970	2.00	3,548,002	3,548,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1)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 평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 평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시 실거래사례를 그 밖의 요인 조정에서 반영하였기에, 실거래사례 가격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비교검토는 생략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3-8	206.6	206.6	3,548,000	733,016,800	-
합 계		206.6	206.6	-	733,016,8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와 원가법에 의한 건물단가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정에 적용할 가액으로서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및 조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용도	사정면적 (m ²)	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3-8	대	206.6	3,548,000	733,016,800	-
합 계		-	-	-	733,016,800	-

- 일련번호 1) 토지가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을 감안한 가격 @3,548,000×0.8= @2,838,000원/m²
- 2,838,000×206.6m²= 586,330,800원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3-8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6.6	206.6	3,548,000	733,016,800	제시외건물 소세를 각아하 토지단가 2,838,000
합 계								₩733,016,8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 '연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 토지로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2-07)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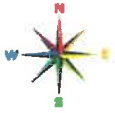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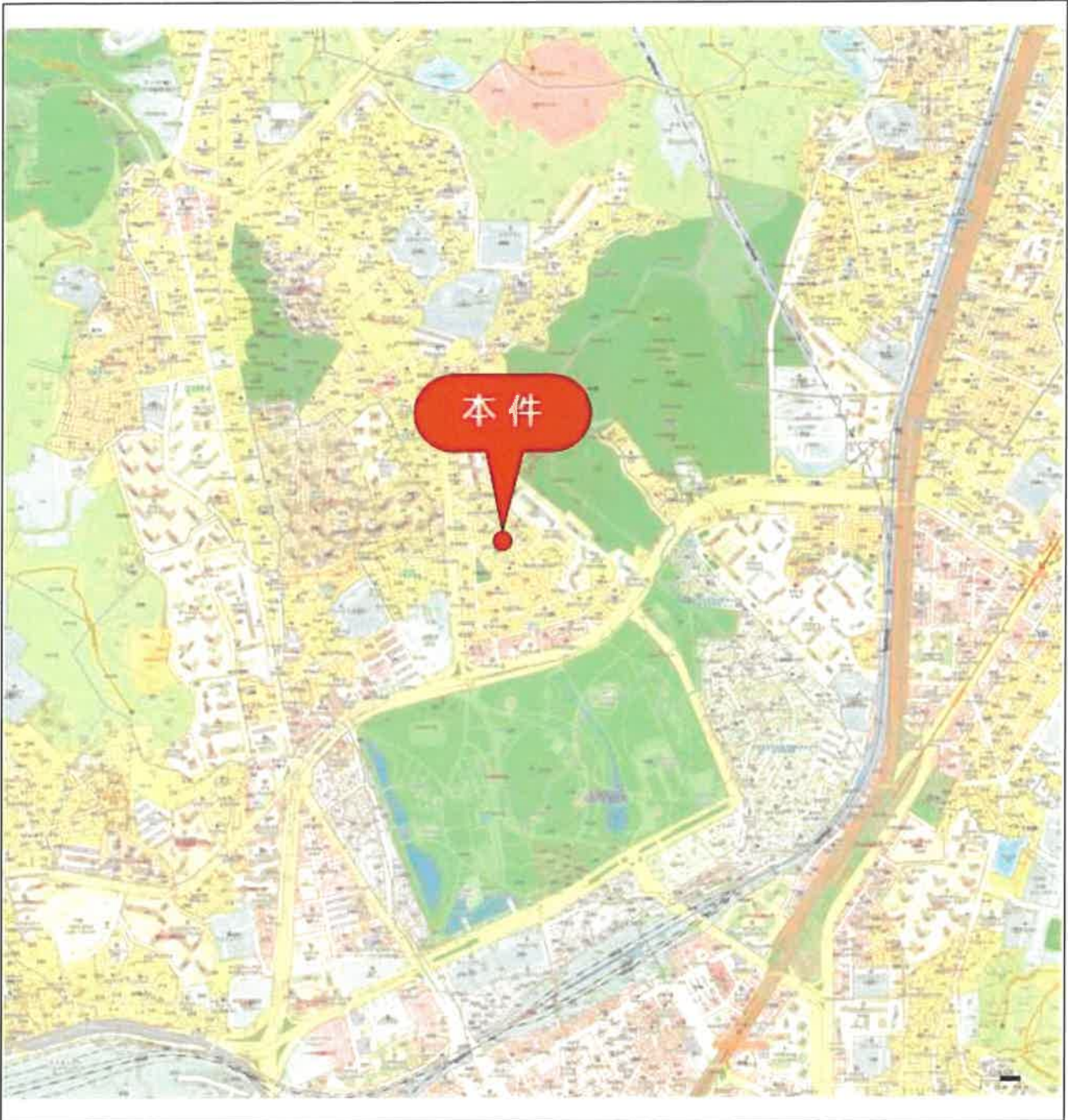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

광역 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3-8



상세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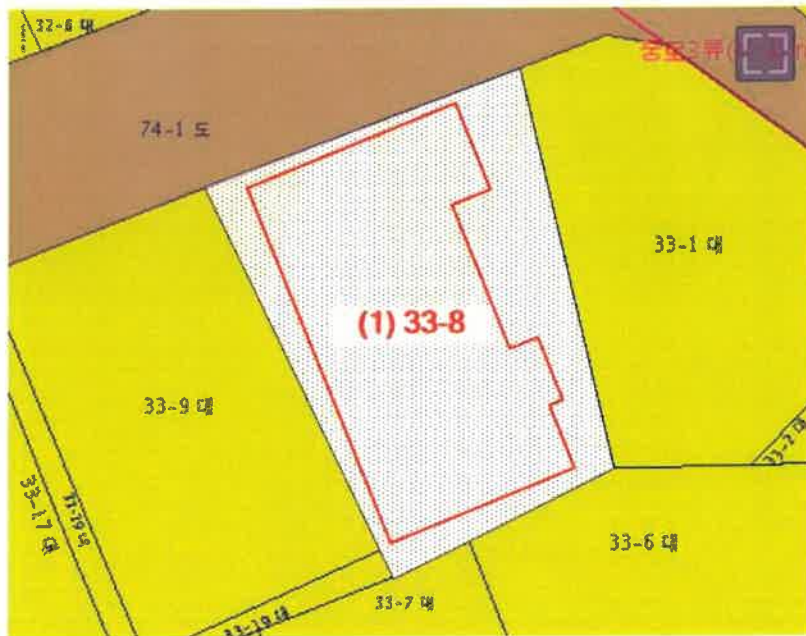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3-8



지 적 도



지적 개황도 :S=1/300



일련번호 1) 33-8

사진용지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주위 전경



주위 전경

회 보 서

우)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201호(거제동, 일화0/T)

TEL. 051-505-9811
FAX. 051-506-9811

문서번호 : 동원25-03-01-01

시행일자 : 2025-03-11

수 신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덕환

참 조 : 경매1계

제 목 : 감 정 의 료 에 대 한 회 보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수	번호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1. 저희 동원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03.04자 귀 제 「2025타경21555」호로 의뢰하신 「전유경 외 4명 소유물건(2025타경21555)」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동원감정평가사사무소



수수료 청구서

(전화: 051-505-9811, FAX: 051-506-9811)

문서번호 : 동원25-03-01-01

수 신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덕환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5.03.04 자 귀 제 「 2025타경21555 호로

의뢰하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3-8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723,772	
실 비	여 비	214,4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3,700
	기타 실비	3,000
소 계	221,100	(695,000+233,016,800 x 9/10,000)x 0.8배 ≒ 723,772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944,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94,400	
합 계	1,038,4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1,038,400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동원감정평가사사무소

